

공공운수노조 국방전문상담관지부 규약

제정 2019.12.25.

개정 2024.03.11.

개정 2025.09.15.

전 문

국방전문상담관지부의 노동자들은 심리상담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 차별 없는 일터,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단결하여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고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자 본 규약을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우리 노동조합은 공공운수노조 국방전문상담관지부(이하 ‘조합’라 한다)라고 하며, 영문 표기는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Counselor Trade Union(약호는 M.D.C.U로 한다)으로 한다.

제2조【목적】 조합은 노동자의 자주적 결사체로서 전문의 정신을 이어받고, 연대와 단결의 정신으로 노동자의 지위 향상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조합원의 고용안정, 실질임금의 향상 및 근무 환경 등 노동조건을 유지·개선에 관한 사항
3. 조직 확대·강화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와 직업병, 직업 재해에 관한 사항
5. 사회 공공성 강화에 관한 사항
6. 다른 노조 및 노동단체, 민주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소재지 주사무소】 조합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하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부장이 근무하는 연고지에 둘 수 있다.

제5조【법인】 조합은 필요할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연합단체】 조합은 전국 노동조합연맹(연합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에는 의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규정과 규칙의 제정 등】 조합은 사업과 운영 등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규정과 규칙 등을 제정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8조【자격】 국방부 전문상담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9조【가입과 탈퇴】 ① 조합의 규약에 동의하는 자는 조합원 가입을 신청할 권리를 가진다.

②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고, 지부장의 승인으로서 조합원이 된다.

③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에 탈퇴 요청을 하고 지부장의 승인으로서 자격을 상실한다.

④ 조합을 탈퇴한 자는 탈퇴일로부터 6개월간 재가입 할 수 없다. 단, 6개월 미만 경과자가 재가입을 희망할 경우 지부장의 판단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부장은 제56조(징계)에 의한 제명 또는 탈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자격의 상실】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2. 퇴직. 단, 본인 의사에 따라 명예조합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명예 조합원으로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2년 이내는 조합비 면제, 3년 이후로 년 2

만원의 조합비가 부과되며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을 시 명예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3. 제명. 단, 규약과 운영 규정에 따른 확정적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그 신분을 유지한다.
4. 탈퇴

제11조【권리】 조합원은 조합 활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총회의 출석, 발언, 의결권
2.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조합의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4. 조합이 관리하는 기금의 이용 또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5. 조합 결정 사항과 사업 집행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6. 그밖에 규약, 규정이 정하는 권리

제12조【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조합의 규약 및 규정과 각종 기구의 결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조합비 및 결의된 각종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단, 휴직 조합원은 예외로 한다.
3. 조직의 규율을 준수하고 조합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
4. 조합의 제반 사업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각종 법령과 노사 간 협약 등에 의한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의무

제13조【일시적 권리정지와 의무면제】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신청에 의하여 그 권리와 의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면제될 수 있다.

1. 일시적으로 조합 활동을 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2. 휴직 기간

② 정지 또는 면제되는 권리와 의무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구제】 조합원이 공식 기구의 결의 사항 등을 수행하다 신분상·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했을 때 조합은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피해보상은 별도의 희생자 규정에 의한다.

제15조【조합비】 ① 조합비는 정률제로 정한다. 조합비의 구체적인 납부 기준 및 액수는 매년 대의원회의 및 총회에서 정한다.

② 조합비의 부과 시점은 매월 급여일로 한다.

제16조【조합원 비밀보호】 조합은 업무상 취득한 조합원의 개인정보 및 비밀을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3장 기구와 회의

제17조【회의기구】 조합에 다음과 같은 회의기구를 둘 수 있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중앙운영위원회
4. 상무집행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제18조【성립과 의결】 ① 각종 회의는 규약 또는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각종 회의의 긴급동의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제19조【특별의결】 ① 조합의 의결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총회 및 대의원대회에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탄핵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해산 합병, 분할 및 조직 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 ② 쟁의행위 의결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절 총 회

제20조【총회】 ①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 기구로 전체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총회 : 년 1회 이상
2. 임시총회
가.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재적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기하고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제21조【의결 사항】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회계감사 제외)과 탄핵,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임원(회계감사 제외) 전원 유고시 직무대행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지부장이 임명한 임원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각종 교섭, 협약, 잠정 합의안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조합의 합병, 분할 및 조직 형태 변경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10.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 및 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11.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12. 조합비 및 각종 특별 부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
13. 희생자구제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4.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 제1호 제정 및 개정, 제2호 중 탄핵, 제9호의 사항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제6호의 사항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조합은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규약의 제정
2. 제1항 제2호의 임원 선출(임명 승인 임원 제외)과 탄핵
3. 제1항 제5호의 조합 잠정 합의안의 승인
4. 제1항 제6호의 쟁의행위의 의결
5. 제1항 제9호의 합병, 분할, 조직 형태 변경 또는 해산

제22조【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지부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2월 중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일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소집 공고에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소집 공고한 내용의 변경은 회의 개최일 7일 이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2절 대의원회

제23조【구성과 의결】 ① 대의원대회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대회는 총회 의결 사항 중 제21조 제4항 각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③ 대의원대회 부의안건 중 제21조 제1항 제4호와 제14호에 규정된 사항 및 그 사안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을 할 수 있다.

④ 희생자구제 대상 및 수준 등 결정에 관한 사항

제24조【선출과 임기】 ① 조합에서 선출할 대의원의 배정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임기가 끝난 후에도 대의원이 선출되지 않은 때에는 본인 희망 하에 연임할 수 있다.

③ 대의원은 임기 종료 1개월 전에 선출한다.

제25조【소집】 ① 지부장은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될 때 지부장이 소집한다.

1.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기하고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제3절 중앙운영위원회

제26조【중앙운영위원회 구성 및 소집】 운영위원회는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그리고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약간 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지부장이 소집한다. 단, 초기에는 최소의 인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중앙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 및 대의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2. 임시총회 및 임시대의원회 소집 요구와 관련한 사항

3. 조합 운영에 대한 방침 및 대책 수립
4.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세출예산의 각 항목 집행액 조정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징계(경고, 정권, 제명)에 관한 사항
6. 각종 규정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7. 부서 부장의 인준에 관한 사항
8.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해체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절 상무집행위원회

제28조【상무집행위원회 구성과 소집】 상무집행위원회는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그리고 각 부서장으로 구성하며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 지부장이 소집한다.

제29조【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 상무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총회 및 대의원대회, 중앙운영위원회의 수임 사항 집행
2. 각종 회의 부의안건 및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3. 각종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4. 단체교섭 준비에 관한 사항
5. 상벌에 관한 사항
6.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7. 노사협약에 관한 사항
8. 각종 포상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0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 조합은 필요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6절 자문위원 등

제31조【자문위원 등】 ① 조합은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

제4장 임 원

제32조【임원】 조합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1명
2. 부지부장 1명
3. 사무국장 1명
4. 회계감사 1~2명

제33조【임원의 선출】 ①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참석자의 과반수를 득표한 자를 선출한다.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선출 또는 추인할 수 있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 선거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득표자순으로 2명을 선정,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선출한다.

제34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장 부 서

제35조【부서】 조합은 업무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각 부에 부장 1명을 두되 필요에 따라 차장을 둘 수 있다.

1. 총무부
2. 조직부
3. 교육부
4. 홍보부
5. 조사통계부
6. 쟁의지도부

7. 복지후생부
8. 체육부
9. 상담안전부

제36조【부서의 주요 업무】 각 부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담당한다.

1. 총무부 : 조합의 회계 업무
2. 조직부 : 조합원 가입조직 규율 유지
3. 교육부 : 조합원 교육
4. 홍보부 : 기관지 제작 및 대내외 홍보 업무
5. 조사통계부 : 조합 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통계 사무 일체
6. 쟁의지도부 : 노동쟁의 발생 판단 및 쟁의행위 업무
7. 복지후생부 : 조합원 복지후생 사업
8. 체육부 : 조합원의 체력 향상에 관한 사항
9. 상담안전부 : 상담 안전, 상담 재해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제37조【부장의 인준】 각 부장은 지부장이 임명하거나 중앙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6장 간부의 세부 임무

제38조【간부의 세부 임무】 ① 간부는 조합의 방침 방향에 따르고 지원하며 전반적인 조합 활동(각종 회의, 집회, 행사, 홍보, 네이버밴드 등)에 적극적으로 참석한다.

② 간부의 세부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부장
 - 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의 일체를 통괄한다.
 - 나.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 다. 각종 조합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 라.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 마. 부장 및 사무직원을 임명한다.
 - 바. 단체교섭 참석 및 교섭 결과 보고 글을 작성한다.
 - 사. 단체교섭 및 체결권을 갖는다.

아. 조직 질서 유지와 조합원의 권익수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자. 선거관리위원 및 단체교섭위원,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차. 규약 해석권을 갖는다.

2. 부지부장

가.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지부장 임무를 대행한다.

나. 각종 회의의 의장단이 된다.

다. 단체교섭 참석 및 교섭 진행, 간사 역할을 한다.

라. 회계규정에 의거 노무사 자문을 전담한다.

마. 공문 초안을 작성한다.

바. 지부장의 승인하에 중요 사업계획 및 준비, 실행하고, 관련 공지글을 작성하여 고지한다.

3. 사무국장

가.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나. 지부장의 결재를 받아 총무부장과 업무 분담을 하여 예산을 집행한다.

다. 상조금 요청, 정년퇴직자 확인 등 회계규정에 따라 업무 처리하되, 예산집행 관련하여 총무부장에게 지시한다.

라. 회계감사에 응한다.

마. 부서장의 임명을 제청한다.

바. 조합 가입·탈퇴 안내 및 접수, 조합원 문의, 연명부 관리, 조합 밴드 관리를 한다.

사. 단체교섭 참석 및 각종 회의록 작성을 한다.

아. 근로시간면제 시간 문서 및 비품 관리대장을 기록한다.

자. 매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매일 1일에 전체 조합원 대상 정기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2) 매일 급여 지급일 10일 전까지 '조합비 일괄 공제' 총괄 문서를 작성하여 지부장에게 제출한다.

3) 매일 급여 지급일에 조합비 입금 및 미입금 확인 후, 관련 총괄 문서를 작성하고 지부장에게 제출한다.

4) 매일 의무금 납부 관련 총괄 문서를 작성하여 지부장에게 제출하고 의무금 납부 관련하여 총무부장에게 지시한다.

차. 기타 명시되지 않는 업무 중 지부장이 지시한 사항

4. 회계감사

- 가.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회계규정에 따른다.
- 나. 규약에 의거 회계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부장에게 보고하며, 지부장은 대의원회를 개최한 후 그 결과를 조합 밴드 게시판에 공개한다.

5. 총무부장

- 가. 조합의 수입·지출에 관한 전체 회계를 담당한다.
- 나. 운영비, 조합비, 법정쟁의비, 상조기금적립금, 후원금, 여비에 대한 월별 장부 기록 및 지출 결의서 작성, 영수증철 등을 관리하고, 지부장,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서명받는다.
- 다. 조합 온라인 통장 및 체크카드 관리를 한다.
- 라. 회계감사에 응한다.
- 마. 예산안, 세입·세출 결산 등을 작성하고 지부장에게 제출한다.
- 바.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고 상조금 요청자, 정년퇴직자 등 회계규정에 따라 예산집행을 한다.
- 사. 정기 지출·비정기 지출 업무를 다음과 같은 지정기간에 수행한다.
 - 1) 매월 5일 이내로 직책수행비, 교섭위원수당, 행정업무수당, 노무사자문비 등을 집행 처리한다(당월 지급).
 - 2)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고 매월 28일에 의무금 납부 처리한다(당월 지급).
 - 3) 지부장의 지급 지시 후 5일 이내로 대의원회의비, 회계감사비 등을 집행 처리한다.
 - 4) 여비, 상조비 등 지출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집행 처리한다.
- 아. 기타 명시되지 않는 업무 중 지부장이 지시한 사항

6. 대의원

- 가. 조합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집행부에 전달하고, 의사결정 결과를 조합원에게 알린다.
- 나. 규약에 의거, 총회를 대신해 예산 심의, 임원 선출, 규약 제정, 조합 잠정 합의한 승인, 쟁의행위 의결, 조합의 합병·분할·조직행태 변경·해산 등 핵심 사안을 의결할 수 있다.
- 다. 회의에서 다룰 논의자료를 미리 읽고 파악하고자 노력한다.
- 라. 조합의 각종 행사와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한다.
- 마. 대의원은 조합의 현장성과 조직력을 강화하는 최전방의 현장 간부로서, 조합 밴드에서 나누는 글에 대한 주체적인 관심 및 반응, 참여를 한다.
- 바. 현장에서 사용자 측의 부당한 지시나 처우를 당하는 조합원의 상황, 관련

문서 등을 발견할 시 즉시 집행부에 보고하여 함께 논의한다.

사. 조합의 운영 관련 필요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집행부에 전달한다.

아. 조합에 대한 홍보 및 조합원 가입을 유도한다.

7. 자문위원

가. 조합의 운영 관련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 자문한다.

나. 집행부의 요청이 없더라도 조합의 비전과 지향점 등 조합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문한다.

다. 조합의 운영 관련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거나 가공하지 않은 정보를 집행부에 제공한다.

라. 조합 밴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소통과 이슈 논의에 대해 적극 참여하고, 논의가 조합의 지향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협력한다.

8. 교섭위원

가. 단체교섭에 참석하고, 교섭 관련 사전·사후 회의 및 활동에 성실히 참여한다.

나. 개별적인 판단을 하지 말고 지부장을 중심으로 사전계획에 따라 함께 행동한다.

다. 절대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개별 접촉하지 않는다.

라. 교섭에서 논의되는 주제나 관련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사, 확인, 숙지 등의 노력을 한다.

마. 필요시 단체교섭에 관한 내용을 조합 밴드와 일반 밴드에 홍보하되, 내용 공개 수준은 사전 논의를 한다.

9. 간사

가. 지부장의 승인하에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의 소통을 책임지는 핵심 인력으로서 역할을 하며, 조합의 의사를 대변한다.

나. 단체교섭 간에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의 진행을 하거나 쟁점·의견 조정 또는 협의하는 등 실무 대응 역할을 한다.

다. 지부장의 승인하에 상급단체, 자문 노무사 등과 소통 및 실무 대응을 한다.

제7장 노동쟁의

제39조【노동쟁의】 ① 조합은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하여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② 조합의 쟁의조정신청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장이 신청한다.

제40조【쟁의기금】 ①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쟁의기금을 특별 부과할 수 있다.

② 쟁의기금은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쟁의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출한다.

제41조【쟁의행위 결의】 ① 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는 조합 밴드 게시판에 공고한다.

제42조【쟁의대책위원회】 ① 쟁의조정신청을 하거나 쟁의 발생이 예측될 때 지부장은 즉시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임원과 지부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쟁의 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및 집행
2. 조합 쟁의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3. 쟁의기금에 관한 사항
4. 결정 사항 불이행 조합원에 대한 임금 이득금 환수 결정 등 각 처분에 관한 사항

제8장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제43조【단체교섭 권한】 ①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지부장이 단체교섭 권한을 갖는다.

② 단체교섭 권한은 향후 추이에 따라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얻어 상급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제44조【요구안 확정】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조합의 요구안을 확정한다.

제45조【단체교섭위원 구성】 ① 단체교섭위원은 지부장이 위촉한다.

② 단체교섭위원은 지부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한다.

제46조【단체협약의 체결】 ① 지부장은 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단체협약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되 노·사 쌍방이 서명·날인한다.

제47조【노사협의위원】 ① 노사협의위원은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그리고 지부장이 추천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

② 지부장은 노사협의회의 조합 측 대표위원이 된다.

제9장 재 정

제48조【재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 및 후원금 등으로 구성한다.

제49조【회기】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0조【운영의 공개】 조합의 회계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51조【회계규정】 조합 회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 회계규정을 둘 수 있다.

제52조【결산 및 회계감사】 지부장은 회계감사로 하여금 반기 1회 이상 당해 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현재의 경리 상황 등에 대한 회계 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감사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한다.

제10장 표창 및 징계

제53조【표창】 조합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조합원 및 대외인사는 상무집행위원회 결의를 얻어 표창한다.

제54조【징계】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었을 시는 징계에 회부한다.

1. 조합규약 및 운영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정당한 결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조합 및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반조직 행위를 하였을 때
 4.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
 5. 조합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
- ② 징계시에는 해당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5조【임원 불신임】 임원 불신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하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56조【징계 종류】 징계 종류는 경고, 정권, 제명으로 구분한다.

제57조【재심청구】 ① 규약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은 10일 이내에 징계를 행한 기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신청으로 징계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않는다.

제11장 해 산

제58조【해산】 조합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재적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결의한 경우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 본 규약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 관례】 본 규약에 누락되거나 미비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3조【특례】 각 부대가 전국으로 분산되어 회의 소집에 제약이 있으므로 SNS 투

표 등 통신매체를 활용할 수 있고, 대의원회의, 재적인원 등과 관련된 규정 등 참석 제한시는 위임장으로 대체하고 참석인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결과를 신속히 SNS 등을 이용해 공표하여야 한다.